

대학원 학·석사 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

제 정	2008. 3.
개 정	2011. 9.
개 정	2013. 7.
개 정	2015. 2.
개 정	2016. 2.
개 정	2016. 11.
개 정	2017. 8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.)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,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경영대학원, Culture-Technology융합대학원(이하 “특수대학원”이라 한다.) 우송대학교 학칙 제32조, 대학원 학칙 제3조 3항, 제13조 2항에 의한 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개정2016.02.18.)

제2조 (모집학과 및 인원)

①모집학과는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설치된 전학과로 한다. 단,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모집인원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한다.

제3조 (지원자격 및 신청) 학·석사연계과정의 지원 자격 및 신청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.

학·석사 연계과정의 지원자격 및 신청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.

①지원 자격은 3학년 여름학기 이수자로서 총점 110학점 이상 취득하고, 총 평균평점 3.5/4.5이상인 자로 한다.(개정2015.02.16.)(개정2016.02.18.)(개정2017.08.28.)

②지원신청은 3학년 여름학기 종강 2주전 까지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실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2015.02.16.), (개정2016.02.18.)

③대학원 지원학과(전공)는 학부과정의 전공에 한하며 타전공은 불허한다.

제4조 (제출서류)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

- ①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1부
- ②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
- ③대학원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1부
- ④성적확인서 1부

제5조 (전형방법) 서류전형은 원칙으로 하되, 학과면접도 병행하여 시행한다.(개정2017.08.28.)

제6조 (수업연한 및 이수학점) 학·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.

①학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과 대학원과정의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2015.02.16.), (개정2016.02.18.)(개정2017.08.28.)

②석사학위과정은 1.5년에 이수할 수 있다.(개정2017.08.28.)

제7조 (수강신청)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다음 각항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①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대학원 교과목 중 6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 (개정2015.02.16.), (개정2016.02.18.)(개정2017.08.28.)

②학·석사연계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제8조 (학사과정 졸업요건 및 혜택)

①학·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에 대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및 졸업작품,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 (등록 및 취소)

①학·석사 연계과정에서 선발된 자는 반드시 대학원 1차 학기에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.(개정2015.02.16.), (개정2016.02.18.)(개정2017.08.28.)

②학·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등록금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.(개정2017.08.28.)

③대학원 입학 후 3차 학기동안 군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및 자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 (개정2017.08.28.)

제10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, 학칙 시행세칙, 내규 및 본 대학원 학칙, 학칙 시행세칙등을 준용한다.

제11조 (준용사항) 삭제(2013.7.18.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7.18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4년 후기 지원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